

## 창의인력양성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4. 5. 1.)

(제명변경 2017. 7. 1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LINC3.0사업단 창의인력양성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7.1.,2022.3.29.>

**제2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산학연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융복합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3. 취·창업 역량강화 지원
4. HATCH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지원 <신설 2022.3.29.>
5. 인력양성장비 활용 및 관리 지원 <개정 2022.3.29.>
6. 4IR 기초 및 혁신교과 운영 지원 <신설 2022.3.29.>
7. 4IR 교육환경 및 인프라 관리 <신설 2022.3.29.>
8. 그 밖에 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<개정 2022.3.29.>

[본조개정 2017.7.1.]

**제3조(위원회)**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4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5조(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)** 창의인력양성교육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7.1.>

**제6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LINC3.0사업단 지원금, 본교 지원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7.7.1.,2022.3.29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창의인력양성센터 운영규정 8-0-3-2

부 칙 <2022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